냉동·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3조(안전상의 조치), 산업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32조(폭발 또는 화 재 등의 예방), 제236조(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 및 제239조(위험 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금지) 등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·냉장 물 류창고 단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등에 필요한 안전보건작업 지침 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조립식 철골 판넬 구조형식,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형식, 우레탄 판넬 구조형식의 냉동·냉장 물류창고 등에서 단열공사 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(가) "냉동·냉장 물류창고"이라 함은 야채, 과일 등 신선도를 요하는 식료품이나 냉동 어패류, 육류 등을 보관하기 위해 냉각설비를 갖춘 단열된 건축물을 말한다.





<그림 1> 냉동·냉장 물류창고